

특정제품 선정 심의 사전 검토 보고

위원회명	설명절 통·반장 보상품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
심의일시	2016. 1. 14.(목) 14:00
안건명	설명절 통·반장 보상품 구매 관련 특정제품 (상품권) 선정

2016. 1. .

검 토 자				
구 분	직 급	성 명	서 명	전화번호
팀 장	행정6급	이 동 재		450-7141
담 당	행정7급	이 수 진		450-7144

자 치 행 정 과

붙임 : 특정제품 심의 사전 검토서

특정제품 선정 심의 사전 검토서

□ 사업내용

사 업 명	설 명절 통·반장 보상품 구매		
발주부서	자치행정과	발주방법	신용카드 구매
사 업 비	45,200,000원	특정제품비	45,200,000원
심의 안건명	설 명절 통·반장 보상품 구매 관련 특정제품 상품권 선정		
<p>[사업개요 : 설 명절 통·반장 보상품 구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대상 : 1,808명(통장 353명 / 반장 1,455명) ○ 지급기준 : 1인당 25,000원 상당 상품권 ○ 구매금액 : 45,200,000원 			
<p>[특정제품 개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안 : 온누리 상품권(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) ○ 2안 : 농산물 상품권(중앙농협 본점) ○ 3안 : 롯데 상품권(롯데백화점 건대점) ○ 4안 : 신세계 상품권(이마트 자양점) 			

□ 추진경위

- 단일 특정품 명의 구매금액 합계 2천만원 초과
- 보상품(상품권)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등 검토
- 자의적인 품목 선정 배제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
□ 특정제품 시장조사

구 분	품 목	사 용 처	비고
제1안	온누리 상품권	전국 전통시장 : 우리구 7개소 (중곡제일, 자양, 노론산, 영동교, 화양제일, 면곡, 신성 골목시장)	
제2안	농산물 상품권	농협, 하나로마트	
제3안	롯데 상품권	롯데백화점, 롯데마트	
제4안	신세계 상품권	신세계백화점, 이마트	

□ 사전 검토내용

분 야	검 토 내 용
필 요 성 (타 당 성)	○ 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영세상인 보호 - 온누리 상품권(전통시장 상품권)이 타 상품권 대비 효용성이 높음
기 술 적 검토사항	○ 잔여분 환불 : 상품권 잔여 금액 각 시장내 점포, 조합사무실 등을 통하여 환불 가능 ○ 사용자 편의 :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 ※ 관내 사용처가 7개소로 가장 편리함
가 격 적 정 성	○ 가격 할인율 : 온누리 상품권 가격할인 폐지 - ‘전통시장 상품권’의 기존 할인율(3%)이 ‘온누리 상품권’과 통합되며 폐지 ('12. 9. 1)
총 합 검토의견	○ 온누리 상품권이 타상품권에 비해 관내사용에 편리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 에 효과가 있어 구매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.